

대구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나8171(본소), 2017나11733(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에스

담당변호사 윤경진

변론 종결 2018. 10. 17.

판결 선고 2018. 11. 14.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단257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주문 제1의 다. 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7. 3. 15.부터 경북 칠곡군 C 임야 569㎡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2㎡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2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과 나. 항 중 각 "560㎡"를 각 "569㎡"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임야 56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도면 1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ㄱ' 부분 19㎡1)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45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9㎡ 지상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2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인도하며, 23,975,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2. 17.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2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23,975,9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09. 5.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F은 1912. 8. 5.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의 아버지 G은 1969년경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점유부분에 신축된 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F의 아들인 H은 1989. 4. 28.에 소유권보존등기, H의 아들인 원고는 1989. 5. 17.에 '1989. 5.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마쳤다.

라. G은 1992. 12. 24.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39㎡와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우사 15㎡(통틀어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G은 2005.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 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 1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ㄱ' 부분 19㎡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45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9㎡ 지상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5. 2.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점유부분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2006. 1. 29.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29.부터 2016. 1. 28.까지의 기간과 2016. 2. 17.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각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사용이익은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차임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유부분의 차임이 2006. 1. 29.부터 2016. 1. 28.까지 합계 23,975,910원이고, 2016. 1. 29.부터 2017. 1. 9.까지 3,415,9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은 월 300,247원 $[=3,415,931\text{원} \times (366\text{일}/347\text{일}) \div 12\text{개월}]$, 원 미만 버림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잘못된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서 마쳐져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을 부인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경북 칠곡군 I 리 일대가 해방 후인 1949년경 이재민들의 주거지로 활용되어 일명 'J'이라는 명칭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당시 국가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택 여러 채를 신축하여 이재민들에게 집을 제공하였는데, K, L 역시 1949년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불하받은 후 M, N에게 매도하였고, G이 1969년경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피고가 2005. 2.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G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G의 점유기간과 피고의 점유기간을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9. 5. 17.을 기산일로 하더라도 20년이 지난 2009. 5. 17.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G이 1969년경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점유부분에 신축된 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한 사실, G이 1992. 12.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G이 2005.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9년경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던 G의 점유를 피고가 2005. 2.경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2) 한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피고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① G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2. 12. 24.에는 이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G은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G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건축주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나 타인과의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그 건축허가신청 시에 타인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만 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뚜렷한바(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240 판결 참조), G이 1992. 12. 24. 자신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부지로 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G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G이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만을 받았다면, G은 소유의 의사 없이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용권만을 얻겠다는 타주점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가 1949년경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경북 칠곡군 1리 일대에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택 여러 채를 신축한 후 이재민들에게 집을 제공하였다는 전제 하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지에 대규모 마을을 형성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아니한 이상 그 협의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점용권만을 부여하는 내용에 불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포기 및 사용대차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 인근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묵시적으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및 이용관계,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3,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3. 14.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2017.3. 14. 이전의 기간에 한하여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점유부분의 면적은 342㎡인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9. 4. 28.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H이나 1989.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가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42㎡라는 넓은 면적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람들(G,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철거나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 또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임야가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건 임야나 그 인근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다가 2016년 이후에야 원고로부터 철거 및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1989. 5.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이미 G이 점유·사용하던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 주택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40016호)에서 원고가 2017. 1.경 제출한 답변서(을4호증)를 보면, '원고의 할아버지이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F이 1920년경 홍수 때문에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의 마음으로 우선 거처를 마련하도록 시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G이 약 50년 전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택 등을 무단으로 축조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69년경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서 신축되어 존재하던주택이 증축, 개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의 선대(F, H)들이나 원고가 이 사건점유부분의 무상사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1992. 12. 24. 자신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인 이사건 임야를 부지로 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그 당시 G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G이 이 사건 임야를 일부 점유·사용하는 것을 선대(F, H)의 뜻에 따라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원고의 묵시적 허용 하에 이 사건 점유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묵시적 허용은 민법상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해당한 다 할 것인데, 사용대주인 원고는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13조 제2항 참조),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점유부분에 있던 주택은 이미 1960년대에 신축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경까지 약 50년이 넘도록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바로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가 측량감정과 차임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을 특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7.3.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14.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 신청서에는 '설령 피고와 사이 에 계약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지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체결된 사용대차 계약은 2017. 3. 14. 원고의 사용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주장하는 이상, 그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명시적으로 사용대차 계약 해지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설령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2017. 3. 15.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2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위 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5. 17.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09. 5.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위 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주문 제1의 다.항)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본소 지연손해금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과 나. 항 중

각"560㎡"은 각 "56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곽용현, 판사 윤민욱

1) 이 사건 2017. 5. 22.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는 '(라) 부분 2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 위치를 별지도면 1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는 '(라)入 부분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412조), 비록 원고가 피고의 반소 제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의 반소 제기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반소 제기는 허용된다.